

##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

[시행 2022. 11. 2.] [환경부고시 제2022-212호, 2022. 11. 2., 제정]

환경부(생활환경과), 044-201-6796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이동소음원 지정)** 환경부장관은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(dB)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.

**제3조(소음 측정)** 제2조에 따른 배기소음 측정은 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규제의 재검토)** 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재검토기한)** 환경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칙 <제2022-212호,2022.11.2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이동소음원 지정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적용례)** 제2조는 이 고시 시행 이후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부터 적용한다.